

질의와 회신



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 · 회신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I. 지방계약관련 질의회신

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 관련 질의

|| 질 의 ||

- 기초금액 2억원인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추진 시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업체와 제안서 제출 시 당초 제안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행정자치부 예규 제186호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적용 · 집행하여야 하며
- 이 경우 기술협상의 진행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하여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 가격협상의 진행은 계약담당자는 협상 기준가격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한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2.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질의

■ 질 의 ■

- ○○군에서 기초금액 1,137백만원(무대장치 887백만원 + 전기공사 250백만원)인 전기공사가 포함된 무대장치를 설치하면서 지방계약법령상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사회복지법인 ○○○회와 수의계약체결을 심의·의결한 후 조달청에 구매계약의뢰 하였으나 조달청에서 전기공사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 해당 군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없이 조달청에 경쟁입찰을 요구하였을 때,
- 계약심의위원회의 당초 결정사항을 준수 하지 않고 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와 심의·결정사항에 대한 변경시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 여부

■ 회 신 ■

- 시·군·구에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계약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나,
- 동 시행령 단서의 규정에 계약체결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였다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계약체결 방법, 입찰방법,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 등은 조달청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3. 시설(방파제)공사 수의계약관련 전차공사 범위 질의

■ 질 의 ■

- 특정 건설사와 매년 수의계약으로 1차(2003년), 2차(2004년), 3차(2005년), 4차(2006년)까지 년도 별로 차수를 달리하여 동일체 구조물인 방파제를 시공했을 때, 2007년도 방파제 축조공사를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평가기준상 전차공사의 범위가 1차(2003년)~4차(2006년)을 말하는 지 또는 4차(2006년)분만 해당되는 지 여부

질의와 회신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있어 행정자치부 예규 제246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상 전차공사의 대상은 금차공사와 동일체 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금차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 구조물을 말하는 바,
- 귀 질의사항과 같이 일직선 방파제축조공사의 전차공사는 금차공사와 하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4차분 2006년 공사가 이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4. 생태영상센터 조성사업 설계용역관련 질의

질의

- ○○군에서 발주한 기초금액 140,000천원인 “○○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입찰에 참여 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 원가계산서 상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엔지니어링 진흥법상 건설부문 요율을 적용하고 과업지시서상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용역비가 산출 내역서에 누락되었을 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기술용역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196호「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관련 법령 뿐 만아니라, 과업내용, 설계서 등 당해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확정된 기술용역 계약의 경우 행정자치부 예규 제197호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일반조건」제15조 내지 제17조에 해당되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 공무원이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결정 할 사항입니다.

5. 생태영상센터 조성사업 설계용역관련 질의

■ 질 의 ■

- ○○군에서 발주한 기초금액 137,319천원인 “00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입찰에 참여 2007. 7.18일 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 원가계산서 상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엔지니어링 진흥법상 건설부문 요율을 적용하고 과업지시서상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용역비가 산출 내역서에 누락되었을 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기술용역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196호「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관련 법령 뿐 만아니라, 과업내용, 설계서 등 당해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확정된 기술용역 계약의 경우 행정자치부 예규 제197호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일반조건」제15조 내지 제17조에 해당되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 공무원이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결정 할 사항입니다.

6. 시설공사 적격심사관련 질의

■ 질 의 ■

- 기초금액 1,600,000천원인 「○○마을 하수도 시설공사」입찰과 관련 개찰 1순위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면허를 보유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상 면허가 기재되어있으나 사업자등록증상에 다른 업종(도매업)으로 등록된(최초 사업자 등록시에는 도매업·건설업으로 등록이 되어있었으나 분실 후 재교부시 누락사항임) 상태에서의 입찰이 무효인지 여부

질의와 회신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경쟁입찰에 있어서 참가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 귀 질의의 경우처럼 관련법령에 정한 면허를 취득하고 사업자 등록증상 당해사업관련 종목이 기재되었고 법인 등기부 등본상 해당업종이 등록되었으나 사업자 등록증 재교부시 일부 종목이 누락되었다면 입찰 무효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7. 예정가격 결정관련 질의

질의

- ○○공사가 ○○역 등 22개 역사에 대한 스크린도어 제작설치를 발주할 예정으로 9개 역사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P)인증 제품 구매설치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13개 역사는 경쟁입찰로 추진할 경우,
- 예정가격 산정 기준은 조달청 원가계산 가격으로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기 시행한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인바
-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또는 전문가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거래가 이미 완료된 경우를 말함)를 직접 조사·확

인한 가격이며

- 귀 질의의 경우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 이며,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조사 · 확인한 가격에 의하는 경우 이미 거래가 완료된 가격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조사된 가격을 평균하여 그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8. 하자보수관련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와 「○○건물 증축공사」관련 2001년 10월 16일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10월 15일 준공하여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2007년 10월 15일까지인 경우
- 하자보수책임 기간 중에 하자가 발생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완료된 이후 동 부분에 다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체결을 한 경우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하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설계대로 시공하고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어있지 않은 경우로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고 담보책임기간이 지난 후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하여야 할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 시설공사 적격심사관련 질의

■ 질 의 ■

-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인 ○○종합건설이 제출한 실적의 내용이,
- 개인사업자가 발주한 주택공사 중 일부인 내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 시공실적으로 인정이 가능 한 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44호-현재 249호) <별표 1>Ⅲ - 1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에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증명서와 최근 3년간 업종 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현재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 공고일 이전까지의 준공이 완료된 공사의 실적(관련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관련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의 준공이 완료된 공사의 실적이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관련 법령상 동일한 업종의 공사 실적으로서 관급공사 실적의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까지 최종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을 의미하며,
- 귀 질의와 같이 민간이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경우 현재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 공고일 이전까지 관련 법령에 의한 승인 등이 완료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10.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급에 대한 질의

■ 질 의 ■

- 용역비 360,000천원 인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물가상승에 따른 품목조정률 6.02%를 준공기한을 앞두고 요청한 경우 계약금 조정이 가능한 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 체결일로 부터 90일이 경과하고 입찰기준일 기준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계약 상대방이 당해공사의 준공 전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다면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1.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등 질의

【 질 의 】

- 청소용역 계약 이행중 계약상대자가 적자를 이유로 폐업신고하고,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새로운 용역업체 선정시까지 청소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 귀 질의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6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2. 장기계속공사 차수계약에 따른 질의

■ 질 의 ■

- 교사신축 기계설비공사를 위하여 공동수급체(공동이행)와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체결후 동공사에 대하여 3차 계약분까지 이행 완료한 상태에서 4차(금차)분을 전차시공자와 수의 계약 체결하고자 하나, 공동수급체구성원 2인중 1인은 관련면허를 반납하였고, 나머지 1인은 폐업상태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자격이 없는 경우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전원이 자격이 없을 경우 연대보증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2. 전차시공자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 미달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연대보증사와 수의계약체결 가능여부
 3. 잔여공사가 있는데도 면허반납 및 폐업된 업체에 대하여 공사 미이행 사유로 부정당재 가능여부
 4. 계약체결 기준일이 장기계속공사의 총차계약 체결일인지, 개별 차수계약일이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신 ■

- 질의 1, 2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의규정에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등록말소등의 경우에도 계속공사를 할 수 있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수의계약의 대상자가 반드시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전차시공자가 공사 미이행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이 되는 것이나, 최종결정은 지방계약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질의 4에 대하여)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바, 계약체결기준일은 총 계약 체결(총공사금액을 부기한 계약일) 기준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Ⅱ. 입찰 유·무효 관련 질의회신

1. 입찰 후 상호·대표자가 경된 경우 입찰 유·무효 질의

■ 질 의 ■

-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는 여러 가지 입찰무효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중 제5호에 해당하는 것 중 상호,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시에는 변경을 하고 입찰서를 제출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입찰서 제출시에는 동 사항이 변경이 되지 않았지만 법인등기부등본 처리기간 때문에 입찰서 제출 후 계약전에 동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낙찰이 되어 계약 체결시 변경된 상호와 대표자성명으로 계약을 할 때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을 할 수 없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관련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일(투찰일) 전일까지 갖추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투찰일)까지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일(투찰일)을 경과하여 상호·대표자성명 등이 변경된 때에는 입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변경신고를 하고 계약체결을 하면 될 것입니다.

2.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 제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 질 의 ■

- ○○○관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입찰에서, A법인(수집,운반업) 대표 △△△는 C사(중간처리업)과 분담이행방식으로, B법인(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공동대표 △△△와 □□□는 별도로 단독으로 입찰하였음. 이때,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인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항의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질의와 회신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하여 입찰무효가 될 것입니다.

3. 대표자 변경시 입찰무효 해당여부 질의

질의

- 화장실 보수공사를 위해 조달청을 통하여 전자입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적격심사를 위해 1순위 업체의 적격심사 서류를 받아봤더니 대표자가 입찰 공고 이전에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입찰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명칭·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면허·허가·등록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효에 해당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한 경우는 입찰무효에 해당합니다.
- 입찰무효 사유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정하고 있으니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의 유·무효 여부질의

■ 질 의 ■

□ 입찰개요

- 전자입찰공고일 : 2007. 3. 14.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7. 3. 14. 10:00 ~ 2007. 3. 19. 14:00
-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07. 3. 19. 16:00
- 법인상호변경 등기일 : 2007. 3. 19
- 투찰일(입찰서제출일) : 2007. 3. 16.(종전상호로 입찰)

- 이 경우 정당한 입찰 건으로 보아 변경된 상호로 계약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법인상호 외엔 변경 없음)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는 입찰일(투찰일, 현장설명참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일(투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바, 상호 또는 법인명칭·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면허(허가·등록)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에 해당합니다.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종전 상호로 투찰하고 투찰일을 경과하여 상호를 변경한 경우는 유효한 입찰이므로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상호로 계약체결을 하면 됩니다.

5. G2b 입력오류와 관련 입찰 유·무효 여부 질의

■ 질 의 ■

- 입찰공고를 하면서 조달청나라장터(g2b) 시스템 입력과정에서 붙임 공고문과 상이하게 개찰 날짜를 입력하여 공고문보다 1일 조기 개찰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총 15개 업체가 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3개 업체가 응찰을 하지 못한 가운데 개찰완료. 이 경우는 1위 개찰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

질의와 회신

공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의 내용과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 공고 내용과 달리 행정상 착오로 개찰을 한 경우라면 당해 입찰을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입찰서에 사용인감이 누락된 경우 입찰이 유·무효 여부 질의

질의

- 우리시에서는 △△테마파크 구축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으로 공고하여 2개 업체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았습니다. 2개업체중 1개 업체는 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개봉결과 정상으로 판정되었으나 1개 업체의 제안서는 정상이고 가격입찰서에는 사용인감이 누락되었습니다.
- 가격입찰서에 겹봉투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였으나 내용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입찰가 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용인감이 누락되었습니다.
 - 사용인감이 누락된 가격입찰서가 무효인지 아니면 겹봉투에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내용에도 주소, 상호,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 유효한 가격입찰서로 보아도 될 것인지 여부
 - 2인의 참여자중 1인의 가격입찰서가 무효인 경우 전체를 무효화 하고 새로운 입찰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인으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평가하여 낙찰자로 결정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은 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용인감을 누락한 입찰은 무효이며, 유효한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7. 공동도급방식(협정)이 입찰공고와 다른 경우 입찰 유·무효 여부 질의

■ 질 의 ■

- 용역개요
 - 용역명 : ○○체육센터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금액 : 180,000,000원
 - 개찰일시 : 2007. 10. 24 11시
- 당초 : 입찰참가자격을 건축사면허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 전문소방시설업 + 정보통신 부문(정보통신)을 갖춘 업체로 대표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업체이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로 함
- 변경 : 입찰참가자격을 건축사면허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 전문소방시설업 + (삭제)을 갖춘 업체로 대표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업체이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로 함
- 상기와 같이 변경공고를 한 후 개찰을 하였으나 1, 2, 3순위업체가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을 분담이행방식으로 협정하여 4개사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의 투찰로 적격심사제외 통보 후 4순위업체와 적격심사 후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 계약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에 구성하는 것이 원칙인 바, 입찰공고 및 변경공고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전산착오이거나 전자입찰시스템상 변경, 취소 또는 재협정이 불가능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체결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라면 입찰자에게 공동수급협정서를 보완제출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공동수급협정서의 보완제출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전산상 착오나 시스템상 문제인지 여부를 조달청에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귀 질의와 같이 1, 2, 3위 입찰업체를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로 처리할 경우 당해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가 되어 유효한 입찰자가 1인뿐이므로 유찰 처리될 것입니다.

8. 담당자의 착오로 전자입찰에서 제외된 경우 처리 여부 질의

■ 질 의 ■

- 전자수의견적 입찰시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상적인 입찰등록을 마치고 투찰까지 완료한 후 개찰을 기다렸으나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계약담당자의 실수로 저의 업체가 탈락된 것을 개찰완료 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미 개찰 완료된 입찰이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34조 및 시행령 제110조에 의거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전자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자가 착오로 인하여 정당한 입찰자를 사전판정에서 제외한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내용을 전산출력하여 순위변경공고를 하면 될 것이나, 입찰기록이 출력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달청에 전산자료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변경공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의 유효·무효 여부 질의

■ 질 의 ■

- 입찰공고문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에 참가토록 명시하였으나 개찰결과 9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그 중 6개 업체는 공고문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개찰 순위가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적격심사(제182호)제8조3항에 근거하여 4순위업체(실적유)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하고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차차순위(개찰결과 낙찰하한선미달)업체에서 무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게 되어 예정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동 개찰건에 대하여 무효화를 선언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재입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업무추진에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동 공사건은 공사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사입찰 참가코드번호가 없어서 공란으로 공고하고 공고문에 명확히 참가자격조건을 부여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본입찰건이 유효한지 또는 입찰무효선언(최종낙찰자 선결정 안함)을 할 만큼 중차대한 사항인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시 예정가격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190호, 2005.12.30)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금액 $\pm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복수예비가격 4개를 추첨토록 하는 것인 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을 하여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였다 해서 전체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10. 낙찰가능 여부 질의

【 질 의 】

- 공사개요
 - 공 사 명 : 간선하수도 준설공사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공고기간 : 2006. 6. 16 ~ 6. 27
 - 입찰서 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 2006. 6. 22(09:00) ~ 6. 27(12:00)
 - 개찰일시 : 2006. 6. 27(화), 14:00
- 간선하수도시설준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진공흡입준설차량을 보유한자로 제한하여 전자입찰공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6. 27일 개찰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낙찰예정업체는 진공흡입준설차량을 2006. 6. 28일부로 소유권 이전하여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낙찰예정 1순위 업체의 차량소유시점에 따른 낙찰가능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면허·등록 등을 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일(투찰일) 전일까지 갖추고 입찰일(투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입찰일(투찰일) 이후에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해당하여 당해 입찰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11. 입찰부적격자의 입찰 유·무효 여부 질의

■ 질 의 ■

-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의 투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최근 수산종묘 입찰공고를 내고 개찰을 하여 4개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 공고문 상에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묘를 확보하고 있는 자' 라고 기재하였고, 지방서 상에 개찰 후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는 것으로 공고하였습니다.
- 아직 낙찰자 결정통보 전이고, 현지조사 결과 1순위 업체는 종묘상태가 아닌 미숙란만 존재하여 담당부서에서는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경우, 1순위 업체의 입찰참가를 무효로 하고 2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재공고를 내고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낙찰자 결정통보 전 부적격으로 판정된 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가 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처리하는 바, 계약담당자가 개찰이후 또는 낙찰자 결정을 하였으나 계약체결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후순위 중 정당한 입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조치는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귀 질의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주관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 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탈락조치를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내용, 입찰상황 및 현지 확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12. 상호변경에 따른 입찰 유·무효 여부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입찰서 제출기한이 4. 5~4. 10까지고 개찰은 11

일 해서 낙찰업체를 선정, 업체가 계약하러 서류를 가지고 와서는 개인업체에서 법인업체로 사업자 명칭을 변경했다고 함. 변경사유는 지위승계(양도양수), (포괄 사업양도, 양수계약서 작성함) 업체가 법인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날짜는 2006. 3. 7이고, 00도에 전기공사업 등록증 재교부 날짜는 2006. 4. 18임.

- 낙찰업체의 사업자 명칭이 변경(개인업체에서 법인업체로,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변경되고 사업장 주소 및 대표자는 동일)되었을 때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참가자격은 투찰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고 투찰일까지 계속하여 당해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일자가 2006. 3. 7.이라면 법인사업자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로 투찰한 경우 무효가 될 것이며, 전기공사업 면허도 투찰일 전일까지 변경되었어야 유효한 투찰에 해당할 것입니다.

13.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폐업)된 업체의 입찰 유·무효 질의

【 질 의 】

- 공사 전자입찰결과 1순위업체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폐업) 당한 업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업체의 입찰 등의 행위(경쟁입찰 참가자격)가 유효(적합)한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면허, 등록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등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해당할 것입니다.

14. 법인상호가 변경된 경우 입찰 유·무효 여부 질의

■ 질 의 ■

- 우리시에서는 물품구입을 하고자 기초금액 36,000,000원(부가세포함)에 대한 입찰을 공고를 하여 입찰서개시일시 2006. 3. 17.14:00 개찰 하였습니다.
- 그런데 1순위자인 업체는 2006. 3. 16일 투찰하였으나 2006. 3. 15일 법인상호만 변경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는 변경 없음) 이 경우 1순위자인 업체와 계약이 가능 한지 여부

■ 회 신 ■

- 입찰자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 면허·허가·등록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무효에 해당하므로, 당해 입찰을 무효처리하고 순위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15. 입찰 및 계약의 유·무효와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질의

■ 질 의 ■

- 법인명칭 및 주소지 변경등기 후 변경등록(G2B예)을 하지 않은 채 이전 명칭으로 입찰하고 적격심사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무효에 해당하여 차순위자를 낙찰대상자로 선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허위서류 제출을 통해 낙찰한 것 등의 사유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입찰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까지는 유효했으나 이후 법인명칭 및 주소지 변경등기하고 계약시까지 변경신고(발주기관예)를 하지 않고 관련면허등록증의 상호도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계약의 유·무효 여부와, ② 유·무효일 경우 각각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 지, ③ 계약시 허위서류를 제출한자 등의 사유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일(투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 입찰하고 입찰일(투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관련 면허·허가·등록내용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바, 계약담당자는 무자격자 또는 부적격자가 입찰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개찰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시 발견된 때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면 될 것이나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는 고의성 유무를 확인하여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입찰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까지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이후 법인명칭, 주소지 변경등기를 하고도 이전 명칭으로 계약체결을 한 경우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단순착오인 경우는 계약무효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서류를 갖추어 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상대자 변경 등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 입찰서 인감날인 누락에 따른 입찰 유·무효 여부 질의

【 질 의 】

- △△도서관에서 도서관이용자용 사물함 위탁운용입찰공고를 보고 입찰을 하여 최고 가격 입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찰서상에 인감날인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 입찰은 무효가 되고 두번째로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입찰서상에 제 자필로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명확히 가격을 제시하였고 입찰서 투찰시 봉한 봉투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판단하는데 이런 경우 낙찰받을 수 없는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무효가 되는 바, 동 시행규칙에 의한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도 무효에 해당 됩니다.